

# 캘리포니아주 애트워터 시(City of Atwater) 수도 서비스 차단 정책

이 정책은 연체 계정의 요금 징수를 위한 애트워터 시의 행정 조치들을 열거하며, 이 조치들에는 통지, 요금 청구 및 수도 서비스의 차단이 포함됩니다. 본 정책은 “시”의 웹사이트에서 일반인이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시 재정부에 (209) 357-6310번으로 전화로 연락하여 본 정책의 조건에 따라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차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개가 넘는 서비스 연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시 또는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으로서, 시는 상원법안 제998호, 수돗물 차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연체 계정

고객 수도 계정은 서비스 기간 다음 달(요금 고지 월) 5일까지 미납되는 경우 연체로 간주됩니다. 연체 계정의 요금 징수에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1. 소액 잔액 계정:**

\$20이하의 요금 고지서 잔액은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고 추가 징수 조치도 초래하지 않고 차후 요금 고지 기간으로 이월되어, 그 기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연체 통지:**

요금 고지서에 대한 납부금이 요금 고지 월 다음 달 5일 근무 시간 종료 시까지 수령되지 않는 경우, \$2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납기 및 연체료는 요금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요금 고지서가 연체되는 즉시, 재 정부는 요금 고지서의 납부를 책임지는 사람 또는 업체(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원 고지서가 연체되고 60일 후에 수도 서비스가 차단된다는 것을 알리는 연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체 통지서는 고객 계정에 지정된 우편 주소로 우송됩니다. “시”는 고객이 업데이트하지 않은 연락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연체료의 면제:**

적격 상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연체료가 면제된 적이 없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 재 정부는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 **4. 납부 협정:**

시 재 정부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은 정상적 납부 기간 내에 그리고 수도 서비스 차단 전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의 납부 협정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는 납기 후 잔액의 최소 50%의 1차 분할 납부가 있는 분할 납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정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시”는 납부 협정 요청에 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상원 법안 제998호, 제116910항에 규정된 재정적 곤경을 겪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부 협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재정적 곤경의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이 납부 협정 또는 대안의 납부 협정을 요청하고 체결하였다면, 시 재정부는 요금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기 요금 고지 기간까지 연장되는 납부 협정은 분할 납부 계획으로 간주되고, 이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고객이 서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납기 후 잔액의 50%의 1차 분할금은 서명 당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계획은 원 고지 날짜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걸쳐 미납 잔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는 고객의 정기 요금 고지서에 추가되고, 그 고지서의 납기일에 따릅니다. 고객은 분할 납부 계획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요금이 각각의 차후 요금 고지 기간에 발생하는 대로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연체 요금을 납부하는 동안 차후에 발생하는 미납 요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 5. 서비스 차단 통지서:

시 재정부는 고객이 최소한 60일 동안 연체할 때까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부는 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전 7 근무일 이내에 서비스 차단 통지서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서비스 차단 통지서는 계정에 지정된 요금 고지 주소로 우송됩니다. 요금 고지 주소와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가 다른 경우, 통지서는 요금 고지 주소와 서비스 주소, 양쪽으로 우송됩니다.

서비스 차단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고객의 성명 및 주소
- ❖ 연체 금액
- ❖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일
- ❖ 대안의 납부 계획을 위해 적용할 절차의 설명
- ❖ 요금 고지서에 반박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의 설명
- ❖ 시 재정부 전화번호 및 수도 서비스 차단 정책의 웹사이트 링크

#### a) 단독 주택의 비-고객 거주 세입자/거주자에 대한 통지

시 재정부는 합당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수도 서비스 계정이 연체되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을 시 수도 서비스가 차단되기 최소한 10일 전에, 통지서에 의해, “시”의 고객이 아닌 거주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 서면 통지는 세입자/거주자에게 그들이 당해 주소에서 수도 서비스에 대한 차후 요금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면, 연체 계정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 없이 애트워터 시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연체 계정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면제받기 위해서, 세입자/거주자는 임대 계약서 형식의 임차 증명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b) 다세대 단지의 세입자/거주자에 대한 통지**

시 재정부는 합당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수도 서비스 계정이 연체되어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을 시 수도 서비스가 차단되기 최소한 10일 전에, 각 거주자에게 송부한 통지서에 의해, 거주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 서면 통지는 세입자/거주자에게 그들이 마스터 계량기로 검침되는 주소에서 수도 서비스에 대한 차후 요금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면, 연체 계정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 없이 “시”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거주자들 중 한 명 이상이 수도 서비스에 대한 차후 요금에 대해 시 재정부가 만족할 정도로 책임을 질 의향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또는 서비스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지하는 물리적 수단이 시 재정부에게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 시 재정부는 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중단 통지서가 배달 불가로 우편으로 반송되는 경우, 시 공공사업부는 합당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거주지를 방문하고 요금 미납으로 인한 중단 통지서를 두고 옵니다.

**6. 차단 기한:**

시 재정부는 서비스 중단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오후 4시까지 모든 연체 수도 서비스 요금 및 관련 수수료를 수령해야 합니다.

**7.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차단:**

차단 기한까지 납부금이 수령되지 않으면, 시 공공사업부는 수도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고객에게 \$20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원 법안 제998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경에 대해 매년 조정되어야 합니다.

**8. 수도 서비스의 재연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수도 서비스를 재개 또는 지속하려면, 고객은 납기 후 금액, 연체료 및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 공공사업부는 납부 후 다음 정규 근무일 종료 전에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서비스 요청에 응하는 시 공공사업부 직원은 납부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시 재정부에 연락하도록 지시합니다.

시 공공사업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연결하거나, 또는 시 공공사업부 허가 없이 연결하는 수도 서비스는 벌금 또는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수도 서비스를 복구한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상도 고객의 책임입니다.

**9. 근무 시간 후 수도 서비스의 재연결:**

상원 법안 제998호로 제정된 바와 같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 공공사업부의 정규 근무시간 후에, 주말에, 또는 휴일에 복구된 서비스는 \$150를 초과하지 않는 근무시간 후 재연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이 근무시간 후 재연결 수수료를 통보받고 그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정규 근무시간 후에 서비스가 복구됩니다. 근무시간 후 재연결 수수료는 재연결 수수료 및 연체 계정에 대한 연체료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상원 법안 제998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무 시간 후 재연결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경에 대해 매년 조정되어야 합니다.

**10. 반송된 수표의 처분 통지:**

수도 서비스의 요금 또는 기타 요금의 납부금으로서 받은 반송된 수표의 수령 즉시, 시 재정부는 그 계정이 미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 재정부는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반송된 수표로 인한 서비스 차단에 대한 의례상 통지서를 5일 전에 제공합니다.

반송된 수표 금액과 반송된 수표 요금이 중지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또는 그 전에 납부되지 않으면 수도 서비스는 차단됩니다. 반송된 수표를 청산하기 위해 그리고 반송된 수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불된 모든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환금 불가 수표가 12개월간 2회 제시되었을 경우 고객은 수표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이전에 차단된 서비스에 대해 반송된 수표:**

고객이 이전에 요금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수도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납부금으로서 환금 불가 수표를 제공하고 시 공공사업부가 서비스를 복구하는 경우, 시 공공사업부는 추가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체없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 대상이었던 수도 요금의 납부를 위해 환금 불가 수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중지 통지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납부금으로서 환금 불가 수표를 발행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2. 분쟁이 있는 요금 고지서:**

고객은 (209) 357-6310번으로 시 재정부에 전화하여 요금 고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시 재정부는 요청 접수 후 10근무일 내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그 기간 내에 답변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답변 지연을 통보받습니다.

이러한 검토 후, 고객이 여전히 요금 고지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객은 시 재정 국장에게 요금 고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국장은 요청 후 10근무일 내에 결정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고객에 결정 지연을 통보합니다.

고객은 재정 국장의 결정서 송달 또는 우송 후 10일 내에 시 행정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자에게 그러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의 제기서는 City of Atwater, 750 Bellevue Road, Atwater, California, 95301의 주소로 시 행정 담당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시 행정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자는 제공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하고 30근무일 이내에 자신의 소견 및 결정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 행정 담당관 또는 그의 피지명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 부록 A

상원 법안 제998호, 제116910항. 대안의 납부 일정에 대해서는 재정적 곤경의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안의 납부 일정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건물의 거주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복지 및 기관 법의 제14088(A)(1)(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일차 진료 기관의 확인서를 고객이 제출합니다.
- ❖ 고객이 자신이 “시”의 정상적 요금 고지 주기 내에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아래의 경우 고객은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사회보장 생활 보조금/주 생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인 경우; 또는
  2. 고객이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 ❖ 고객은 본 부록에서 설명된 정책들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가 제공하는 대안의 납부 일정을 체결하기로 동의합니다.